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6. 6. 23.>

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·도·특별자치도의
사무(제10조제4항 관련)

1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가. 51층 이상인 건축물(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나.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(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한다)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
5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(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.
6. 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.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.
7. 통합특별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
8.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·기관별 정원